

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9 ~ 2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9. 02. 13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, 제7조)

-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조문(안 제1조)
→ 「지방재정법」 제116조 ⇒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
-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련 조문(안 제7조)
→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 ⇒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

나.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.(안 제4조)

- 재정보증 한도액을 “110만원 이상”에서 “1천만원 이상”으로 조정

다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. (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)

- (지방)자치단체장 등 ⇒ 군수
(안 제2조제2호, 제3조제1항·제3항, 제6조, 제7조제1항·제3항, 제8조제2항)
- 의하여(한) ⇒ 따라(른)
(안 제1조, 제3조제3항, 제4조, 제5조, 제7조제3항)
- ~이라 함은 ⇒ ~이란(안 제2조)
-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(안 제2조)
- 이외 ⇒ 외(안 제2조제2호)
- 당해 ⇒ 해당(안 제6조, 제7조제1항·제2항)
- 기타 ⇒ 그 밖에(안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)
- 중복되어 표현이 어색한 “이를”을 삭제(안 제6조, 제8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, 제95조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38조
-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2) 입법예고 결과 : 생략(입법내용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·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 없음)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95조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”을 ““회계관계 공무원”이란”으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계기된자 이외”를 “해당하는 자 외”로, “자치단체장 등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장 등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장 등을”을 “군수를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11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, “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”을 “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장 등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, “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장 등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장 등의”를 “군수가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 단체장”을 “군수”로, “이를 보관·관리”를 “보관·관리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2조(회계관계 공무원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호에 계기된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<u>자치단체장</u>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	<p>제2조(회계관계 공무원) ----- “회계관계 공무원”이란 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 <u>해당하는 자 외</u>----- ----- <u>군수가</u> -----</p>
<p>제3조(재정보증)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재정보증) ① <u>군수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따른</u> ----- <u>군수를</u> 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<u>110만원</u>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<u>1천만원</u>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5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보험료의 지급)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보험료의 지급) 군수는 ----- ----- ----- 해당연도 세출 예산에서 -----.</p>
<p>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군수는 -----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----- 그 밖에 ----- ----- 해당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해당 ----- -----.</p> <p>③ 군수는 ----- 따른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</p> <p>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보증보험증권은 <u>당해 단체장</u>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<u>이를 보관·관리</u>한다.</p>	<p>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군수</u> ----- ----- <u>보관</u> ----- <u>· 관리</u>---</p>